

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 定款

制定 1987. 6. 3

第1章 總 則

第1條(名稱) 本 協會는 社團法人 韓國漁港協會
(以下 本 協會라 한다) 라 稱한다.

第2條(目的) 本 協會는 漁港 關聯者의 知識 向上과 共同利益 增進 및 會員相互間의 親睦을 圖謀하며 漁港技術의 健全한 發展과 漁港開發 및 管理運營의 效率化에 奇與함을 目的으로 한 다.

第3條(所在地) 本 協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에 두고 必要에 따라 支部 또는 出張所를 둘 수 있다.

第4條(公告) 本 協會의 公告는 서울特別市內에 서 發行하는 日刊新聞에 揭載한다.

第2章 事 業

第5條(事業) 本 協會는 第2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事業을 行할 수 있다.

1. 漁港에 관한 企劃, 調查 및 研究
2. 漁港에 관한 諮問, 建議 및 請願
3. 漁港에 관한 政府, 公共團體, 其他의 委託役務 遂行
4. 漁港에 관한 國內外 圖書 및 資料蒐集 分析
5. 漁港에 必要한 共同施設의 設置 및 管理
6. 漁港에 관한 會誌, 圖書, 其他 刊行物의 發刊
7. 漁港關聯 國內外 學會, 團體 等과의 技術協力

8. 漁港分野 從事者의 技術研修, 海外 派遣 및 研究 補助
9. 漁港에 관한 弘報 및 啓蒙
10. 漁港發展 有功者 表彰
11. 會員의 福祉厚生에 관한 事項
12. 其他 本 協會의 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項

第3章 會 員

第6條(會員) 本 協會의 會員은 正會員과 特別會員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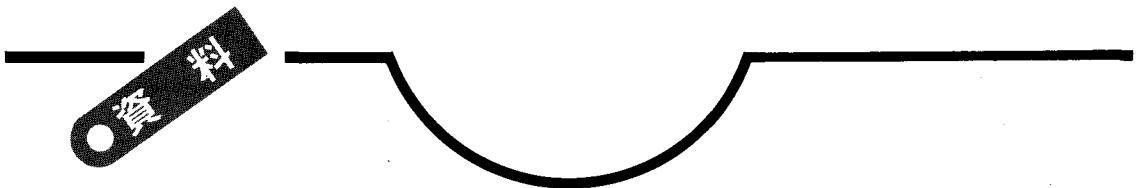
第7條(正會員) 本 協會의 正會員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法人 또는 自然人으로 構成한다.

1. 漁港關聯 學者, 技術者 및 公務員
2. 漁港 施設事業의 施工者
3. 漁港에 관한 技術用役 事業者
4. 漁港施設의 利用 또는 管理運營과 關係있는 團體
5. 漁港關聯 行政機關 또는 團體 勤務 經歷者

第8條(特別會員) 本 協會의 特別會員은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法人 또는 自然人으로서 正會員 3人 以上的 推薦을 받은 者로 한다.

1. 本 協會 發展에 功勞가 있는 者
2. 漁港에 관한 學識과 經驗이 豐富한 者
3. 本 協會의 目的에 賛同하는 者

第9條(加入節次) ① 本 協會에 加入하고자 하는 者는 所定의 加入申請書를 提出하고 加入



會費를 納付하여야 한다.

②第1項의 申請書를 接受하였을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加入의 可否를 申請人에게 通知한다.

第10條(會員의 權利) 會員은 選舉權, 被選舉權, 議決權 및 協會事業遂行에 따른 諸般利益을 享有할 權利를 가진다. 다만, 特別 會員은 會長 및 副會長이 될 수 없다.

第11條(會員의 義務) 會員은 本 協會의 定款, 總會 및 理事會의 議決事項을 遵守하여야 하며 會費, 基金, 手數料, 分擔金 等의 經費를 納付 할 義務가 있다.

第12條(任意脫退) 會員의 脱退는 任意로 할 수 있으며 脱退된 會員의 本 協會에 대한 債權, 債務處理는 理事會에서 定하는 바에 따른다.

第13條(會員의 制裁) 會員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할 때에는 理事會의 議決에 의하여 除名, 資格停止, 警告 等의 處分을 할 수 있다.

1. 本 協會의 定款 또는 總會 및 議決事項을 違反하였을 때
2. 本 協會의 名譽를 損傷시키거나 信用을 失墜시키는 行爲를 하였을 때
3. 本 協會에 納付하여야 할 經費의 納入을 怠慢히 하였을 때

第14條(自然脫退) 會員이 다음 各號의 하나에 該當하는 事由가 發生하였을 때에는 自然 脱退된다.

1. 破産宣告를 받았을 때
2. 企業을 廢業하였을 때
3. 會員의 資格을 衰失하였을 때

第15條(權利喪失) 會員이 任意 脱退하거나 懲戒 또는 資格喪失 等으로 除名되었을 때에는 會員으로서 모든 權相를 衰失하며 이미 納付한 會費等 經費와 本 協會의 資產에 대하여 아무런請求를 하지 못한다.

第4章 任 員

第16條(任員) ①本 協會에는 다음의 任員을 둔다.

- | | |
|---------|-------|
| 1. 會長 | 1名 |
| 2. 副會長 | 5名以内 |
| 3. 專務理事 | 1名 |
| 4. 常務理事 | 2名以内 |
| 5. 理事 | 20名以内 |
| 6. 監事 | 2名 |

②會長, 專務理事, 常務理事는 常勤으로 한다
第17條(任員의 選任) ①會長, 副會長, 理事 및 監事는 總會에서 選出한다.

- ②專務理事 및 常務理事는 理事會의 同意를 받아 會長이 任命한다.
- ③會長,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는 水產廳長의 承認을 받아야 한다.

第18條(任員의 報酬) ①任員은 名譽職으로 하되 常勤任員은 有給으로 한다.

- ②名譽職 任員도 總會의 議決에 의하여 手當을 支給할 수 있다.

第19條(任員의 任期) ①任員의 任期는 3年으로 한다. 다만, 監事의 任期는 2年으로 한다.

- ②任員의 任期가 決算에 관한 定期總會의 期日前에 滿了된 때에는 그 定期總會가 終了될 때까지 이를 延長한다.

第20條(任員의 權限) ①會長은 本 協會를 代表하고 總會와 理事會의 議長이 되며 業務를 統理한다.

- ②副會長은 非常勤으로서 會長을 補佐하며 會長 有故時 年長者 順位에 따라 會長의 職務를 代行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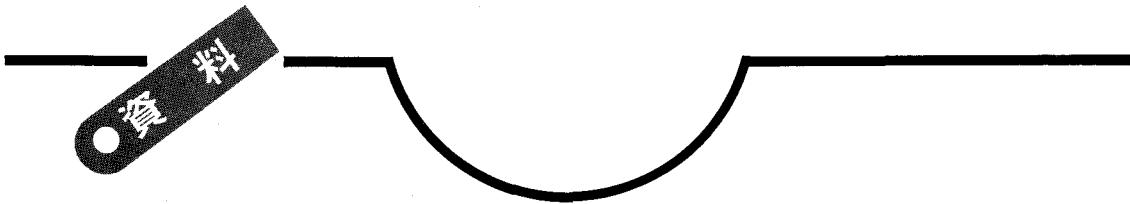
- ③專務理事는 會長의 指示에 따라 業務를 執行하고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.

- ④常務理事는 會長 및 專務理事의 指示에 따라 業務를 執行하고 職員을 指揮 監督한다.

- ⑤理事는 理事會에 參席하여 議決權을 行使한다.

第21條(監事의 權限) ①監事는 本 協會의 財產 및 業務執行 狀況을 監查한다.

- ②監事는 理事會에 出席하여 意見을 陳述할 수 있다.



③ 監事는 監查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.
第22條(名譽會長 및 顧問) ① 本 協會에 名譽會長 및 顧問 若干名을 둘 수 있다.

② 名譽會長 및 顧問은 理事會의 決議로 推戴한다.

③ 名譽會長 및 顧問은 會長의 諮問에 應하며 總會와 理事會에 出席하여 發言할 수 있다.

第 5 章 事務機構 및 職員

第23條(事務機構) ① 本 協會의 業務를 擔當하기 위하여 必要한 部署를 둔다.

② 第 1 項의 部署外에 必要에 따라 研究所를 둘 수 있다.

③ 第 1 項 및 第 2 項에 관한 組織과 事務分掌은 이를 規程으로 定한다.

第24條(職員) 本 協會에 必要한 事務職員을 두되 職級 및 定員에 관한 事項은 이를 規程으로 定한다.

第25條(職員의 任免) ① 職員은 會長이 任免한다.
② 職員은 上司의 命令에 服從하여 業務를 誠實히 執行하여야 하며 人事管理 및 服務에 관한 事項은 이를 規程으로 定한다.

第26條(諸規程의 報告) 本 協會 職員의 人事管理, 職制 및 服務에 관한 規程은 水產廳長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第 6 章 會 議

第27條(會議의 種類) ① 本 協會의 會議는 總會와 理事會를 둔다.

② 理事會에는 特殊業務를 協議하기 위하여 特別委員會를 둘 수 있다.

第28條(總會) ① 總會는 定期總會와 臨時總會로 하고 會長이 이를 召集한다.

② 定期總會는 每會計年度 終了後 60日 以内에 開催한다.

③ 臨時總會는 理事會에서 議決하거나 會員의 3分의 1以上이 連名으로 要請하면 召集한다.

第29條(總會의 召集節次) 總會의 召集은 會議의

目的, 日時 및 場所를 記載한 書面 또는 電言通信으로 會議開催 7日前까지 會員에게 通知하여야 한다.

第30條(總會의 成立과 議決) ① 總會는 會員過半數以上出席으로 成立하며 出席會員過半數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한다. 다만, 可否 同數의 境遇에는 議長이 이를 決定한다.

② 定款의 改正은 會員過半數以上의 出席과 出席 會員 3分의 2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한다.

第31條(總會의 議決事項) 總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.

1. 定款의 改正
2. 任員의 選任
3. 事業計劃 및 收支豫算의 承認
4. 事業報告 및 收支決算의 承認
5. 本 協會의 解散 또는 合併
6. 其他 理事會가 議決하여 附議한 事項

第32條(總會 議決權의 代理) 會員은 代理人으로서 總會의 議決權을 代理할 수 있다. 다만, 代理人은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.

第33條(理事會) ① 理事會는 會長, 副會長, 專務理事, 常務理事 및 理事로서 構成하며 會長이 召集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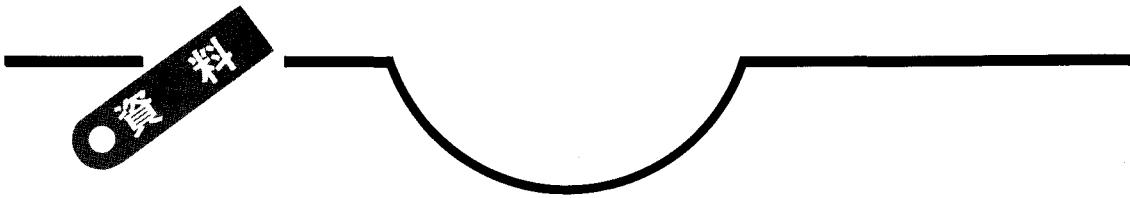
② 理事會는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할 때 또는 理事 3分의 1以上의 要請이 있을 때 召集한다.

第34條(理事會의 召集節次) 理事會의 召集은 會議開催 5日前까지 書面 또는 電言通信으로 通知하여야 한다. 다만, 緊急한 事由가 있을 때에는 2日前까지 通知할 수 있다.

第35條(理事會의 成立과 議決) 理事會는 在籍理事過半數以上의 出席으로 成立하고 出席理事過半數以上의 賛成으로 議決한다.

第36條(理事會의 書面議決) ① 會長이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書面決議로서 理事會開催를 가름할 수 있다.

② 書面決議는 在籍理事 3分의 2以上 賛成으로 議決한다.



第37條(理事會의 議決事項) 理事會의 議決事項은 다음과 같다.

1. 總會 附議事項
2. 諸規程의 制定 및 改廢
3. 總會 委任事項
4. 會員의 加入 및 除名 또는 懲戒
5. 專務理事 및 常務理事 任命 同意
6. 加入費, 會費, 其他 賦課金의 決定
7. 重要財產의 取得 및 處分
8. 總會의 召集 要請
9. 其他 本 協會 運營上 必要한 事項

第38條(理事會 議決權 의 代理) 理事는 代理人으로 하여금 理事會 議決權을 行使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代理人은 委任狀을 提出하여야 한다.

第39條(議事錄의 作成) ① 總會와 理事會는 議事錄을 作成하여야 하며 議長 및 議長이 指名하는 出席理事 2名 以上이 記名 捤印하여야 한다.
② 總會 및 理事會에 幹事는 會長이 이를 補한다.
③ 議事錄은 幹事が 作成한다.

第7章 會 計

第40條(會計年度) 本 協會의 會計年度는 政府의 會計年度에 準한다.

第41條(基金) ① 本 協會는 必要에 따라 基金을 造成할 수 있다.
② 基金의 造成 및 運用管理에 관한 事項은 規程으로 定한다.

第42條(經費) ① 本 協會의 經費는 다음의 收入으로 充當한다.

1. 會費(加入, 年間)
2. 負擔金, 贊助金 및 補助金
3. 事業收入 및 其他收入

② 第1項의 會費 負擔基準 및 納入方法은 規程으로 定한다.

第43條(假豫算) 本 協會의 收支豫算이 不得已한

事由로 會計年度가 開始되기 前까지 總會의 議決을 거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總會에서 豫算案이 議決될 때까지 理事會의 議決에 따라 前年度 豫算에 準하여 執行할 수 있다.

第44條(監查) ① 會長은 每會計年度 終了後 事業報告書 및 決算報告書, 財產目錄, 貸借對照表, 過不足金 處理案을 作成하여 監事의 監查를 받아야 한다.
② 監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監查結果를 總會에 報告하여야 한다.

第8章 解散 및 清算

第45條(解散) 本 協會의 解散은 總會에서 會員過半数 以上的 出席과 出席會員 3分의 2以上의 議決이 있을 때 이를 行한다.

第46條(清算人) 本 協會가 解散할 때에는 總會에서 清算人을 選任한다.

第47條(殘餘財產의 處理) 本 協會의 清算이 完了된 後에도 殘餘財產이 있을 때에는 國家에 歸屬한다.

附 則

1. (施行) 本 定款은 水產廳長의 許可를 받은 날로부터 施行한다.

